

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9. 11. 26 규칙 제58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) ① 청소년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가 화성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.

③ 시설의 개·보수, 자료의 정리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, 휴관기관,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시설의 운영) 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,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리자가 「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, 개인보호장구,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·정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신청)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(신규, 변경, 취하)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,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(신규, 변경, 취하)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. 다만,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시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수강신청)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수강신청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,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시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재산·물품관리) 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, 전매,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.

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·증축, 개·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·물품을 「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화성시 물품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지원)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강사초빙) 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화성시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

시 설 명	부 속 시 설 명		운 영 시 간		정기휴관일	비 고
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(유엔아이 센터) 체육시설	수영장		월~금요일	06:00 ~ 21:00	매월 첫째· 셋째 일요일, 공휴일	
			토요일	06:00 ~ 18:00		
			일요일	10:00 ~ 17:00		
	아이스링크		월~금요일	06:00 ~ 23:00	매월 첫째· 셋째 일요일, 공휴일	
			토~일요일	10:00 ~ 18:00		
	헬스장		월~금요일	06:00 ~ 21:00	일요일, 공휴일	
			토요일	06:00 ~ 18:00		
	실내골프 연습장		월~금요일	09:00 ~ 21:00	일요일, 공휴일	
			토요일	09:00 ~ 18:00		
	실내체육관		월~금요일	06:00 ~ 23:00	매월 첫째· 셋째 일요일, 공휴일	프로그램별 상이
			토~일요일	06:00 ~ 18:00		
		스포츠과학 연구소		월~금요일	09:00 ~ 18:00	일요일, 공휴일
			토요일	09:00 ~ 18:00		
화성시 청소년수련관			월~금요일	09:00 ~ 21:00	일요일, 공휴일	
			토요일	09:00 ~ 18:00		
화성시 누림청소년문화의집			월~금요일	09:00 ~ 21:00	매월 첫째· 셋째 일요일, 공휴일	
			토,일요일	09:00 ~ 18:00		
화성시 동탄청소년문화의집			화~금요일	09:00 ~ 21:00	월요일, 공휴일	
			토~일요일	09:00 ~ 18:00		
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	본소	월~금요일	09:00 ~ 21:00	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	토요일은 상담 유무에 따라 본소 운영	
	분소	월, 금요일	09:00 ~ 18:00			
		화~목요일	09:00 ~ 21:00			
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			연중무휴	00:00 ~ 24:00		
화성시 청소년놀터 1호점(병점)			화~금요일	12:00 ~ 21:00	매월 첫째· 셋째 일요일, 공휴일	
			토~일요일	09:00 ~ 18:00		
화성시 청소년놀터 2호점(동탄)			화~금요일	12:00 ~ 21:00	월요일, 공휴일	
			토~일요일	09:00 ~ 18:00		
화성시 청소년놀터 3호점(봉담)			화~금요일	12:00 ~ 21:00	월요일, 공휴일	
			토~일요일	09:00 ~ 18:00		
화성시 청소년놀터 4호점(향남)			화~금요일	12:00 ~ 21:00	월요일, 공휴일	
			토~일요일	09:00 ~ 18:00		

[별지 제2호서식]

수 강 신 청 서						접수 번호		
신청인	성명		남		생년월일	년	월	일
			여					
	전화번호				SMS문자 수신동의	☐ 예 ☐ 아니오		
	주소							
수강 프로 그램	프로그램명				수강료			
	강습요일				강습시간			
감면대상	☐ 여 ☐ 부		감면사유					
※ 첨부서류: 감면 증빙서류(감면대상 시), 기타 필요한 서류								
「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: (서명 또는 날인) 귀 하								